

의안번호	2214008
의 퇴 인	이훈기의원
회 답 일	2025.12.23.
추 계 번호	25D5946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8억 4,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96억 600만원(연평균 19억 2,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심의위원회 운영비	1,846	1,883	1,921	1,959	1,998	9,606	1,921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사무국의 설치)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둠	의무규정
3	안 제7조(사실조사 등)	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9조(보상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함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피해자: 사망·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상이 피해자: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의무규정

5	안 제10조(의료지원금)	상이 피해자 중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지급함	의무규정
6	안 제11조(생활지원금)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22조(추모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관·추모공원 건립, 위령·추모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23조(피해회복지원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	○	
2	안 제6조(사무국의 설치)	○	
3	안 제7조(사실조사 등)	○	
4	안 제9조(보상금)	×	- 제정안은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2기 진실화해위 조사활동기간(2021.5.27.~2025.5.26.)은 종료된 상태로 진실규명결정이 조사활동기간 중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 시행 시기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참고자료] 주요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일
5	안 제10조(의료지원금)	×	
6	안 제11조(생활지원금)	×	
7	안 제22조(추모사업 등)	×	- 또한 제정안은 보상금 지급을 사망·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당시 월급여, 월실수입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 개인별 보상금등의 지급액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보상금 등의 추계가 곤란함
8	안 제23조(피해회복지원센터)	-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추모사업 등은 각 시설 소재 지역별로 주관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내용, 규모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가 곤란 미대상: 피해자의 피해회복지원사업은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이용하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비는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라 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참고하여 추정하되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은 제외함

[표 2] 제정안과 「여순사건법」 상 위원회 비교

구분	제정안	「여순사건법」
위원회 구성	11명 이내	15명 이내
위원장	국무총리	국무총리
지원조직	사무국	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
지원조직 규모	—	2국 3팀 (정원 21명: 전문임기제 6명, 파견 15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사건 피해자 규모와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규모가 상이¹⁾할 수 있으나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사건의 경우 피해지역이 다양하여 조사지역 범위가 넓고,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가정하되, 제정안의 심의위원회에서 수행 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
- [참고자료]진실규명결정 대상 집단수용시설 현황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운영비(사무국 운영비, 사실조사 등 경비 포함)는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의 예산을 준용함
-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은 48억 400만원이며,

1)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사건 피해자 1,105명(진화위 종합보고서, 2025.11.), 여수·순천 10·19사건 10,000여명(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제정안의 심의위원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연구용역 등의 사업예산을 제외하면 17억 7,600만원으로 해당 예산에 물가상승률²⁾을 적용함

[표 3]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2025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용	예산액	제정안의 심의위원회 관련 사업 여부
위원회 및 지원단 운영 전문임기제 인건비	362	○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전문임기제 인건비	226	×
상용임금(기간제근로자)	124	○
여순사건위원회 회의 운영	227	○
위원회 운영 경비	1,062	○
손실보상금(의료지원금 등)	136	×
진상보고서 발간	170	×
여순사건 관련 연구용역 추진	250	×
실무지원회 지원(지자체 보조)	2,246	×
계	4,804	1,7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8억 4,600만원 등 향후 5년간 96억 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심의위원회 운영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심의위원회 운영비	1,846	1,883	1,921	1,959	1,998	9,6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11.)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자료] 주요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일

관련 사건	진실규명 결정일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2022. 8. 23., 2023. 2. 7., 2024. 1. 9., 2025. 1. 21., 2025. 4. 23.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2022. 10. 18., 2024. 3. 26.
서울동부여자기술원 등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2024. 1. 9.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2024. 9. 6.
서울 희망소년원 인권침해 사건	2024. 9. 24.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	2024. 10. 8.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2025. 2. 25.
목포 동명원 부랑아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2025. 4. 22.
서울 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2025. 4. 22.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2025.11.)

[참고자료] 진실규명결정 대상 집단수용시설 현황

관련 사건	진실규명 인원	운영기간	최대 수용인원	
				연도
서울시립갱생원	7	1961~	1,957	1986
서울시립아동보호소	20	1947~1975	2,328	1966
서울희망소년원	2	1954~?	260	1960
서울동부여자기술원	3	1961~1994	—	
형제복지원	643	1960~1992	3,164	1986
영화숙·재생원	181	1951~1976	600	1969
덕성원	1	1952~2000	130	1971
선감학원	230	1942~1982	407	1956
성혜원	1	1978~	528	1986
평택여자기술양성원	1	1974~1983	—	
의정부부녀복지원	2	1981~1988	—	
양주여자기술학원	2	1971~1993	—	
협성여자기술양성원	2	1962~1992		
대구시립희망원	4	1958~	1,400	1986
천성원	2	1979~	(성지원) 600 (양지원) 582	1986
동명원	4	1967~	180	1983
계	1,105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2025.11.)